



**1566-1566**  
**www.axa.co.kr**

**AXA손해보험주식회사**  
AXA General Insurance Co.,LTD.  
0432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갈월동)  
한진중공업빌딩 11층

# 자동차보험약관 다이렉트개인용

#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는 AXA다이렉트!

AXA다이렉트는 출범 이래 수많은 혁신적인 시도들로 시장을 놀라게 해오고 있으며, 이제 자동차보험을 넘어 일반보험 분야로 그 성공과 혁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AXA다이렉트는 고객중심의 생각과 혁신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 1:1 보상상담서비스를 도입하였고, 국내 최초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모바일을 통한 차별화된 보상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보험, 치아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 상해, 장기보험으로까지 사업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여준 혁신과 편리한 서비스를 이제 일반보험 상품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 AXA다이렉트를 필요로 할 때, 편리한 서비스를 최고의 품질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며, AXA다이렉트는 혁신과 신뢰의 선도 주자로서 고객 여러분들께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동차 사고 발생시..

발 생 즉 시 정 차	• 어떤 사고라도 일단 멈춘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 만약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 해 자 구 호 조 치	•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확인하고 중상자의 경우에 주위 사람의 협조 또는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깁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현장보존후 증거 확보	•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위치(백묵, 스프레이 등을 활용하고 사진기가 있으면 사진촬영), 사고장소, 사고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 또는 보존합니다. • 차대차사고의 경우는 쌍방이 연락처를 교환하고 간략히 사고경위를 작성 서명하고 보관한 후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 차량이 제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엔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사고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킵니다. • 사고목적자(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노상사비, 다툼 등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 찰 서 신 고	•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95.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모든 물적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 단순 후미 추돌사고 등 과실이 다툼이 없는 경미한 사고는 사람이 다친 경우라고 서로 합의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경찰서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통보시 보상(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통 보	• 통보내용 - 피보험자동차 - 사고일시, 장소, 내용, 피해상황 - 사고발생경위 등 -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 경찰서 신고여부(경찰서 명)
1566-1566 (내 선 3번)	• 통보장소 - 각 보상서비스 센터 또는 콜센터

##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여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콜센터 : 1566-1566, 1588-1566 내선번호 4번)

-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보험계약시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하신 고객님께서서는 보험기간 중도에 해당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하게 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으셔야만 사고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도에 자동차를 바꾸신 경우
- 그 외 보험계약 당시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 고객 안내문을 못받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566-1566, 1588-1566 (내선번호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회사,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은행연합회, 업무위탁 회사 및 기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이하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접수 : 당사 홈페이지 (www.axa.co.kr) | 전화접수 : 1566-1566  
서면접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4 한진중공업빌딩 12층 AXA손해보험주식회사

-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전화 : 1566-1566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4 한진중공업빌딩 12층 AXA손해보험주식회사
- 대한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  
전화 : 02-3702-854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6, 7, 8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기획조사부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전화 : 금융감독원 민원실 (국번없이) 1332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 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사용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의 제공 등 법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전 화 : (02)3145-7518  
인터넷 : www.fss.or.kr
- 대한손해보험협회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전 화 : (02)3702-8585  
인터넷 : www.knia.or.kr

#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 자동차(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b>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b> .....	<b>4</b>
<b>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b> .....	<b>7</b>
제1장 배상책임 .....	7
제1절 대인배상 I .....	7
제2절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 .....	7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	10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2
제3절 자기차량손해 .....	13
<b>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b> .....	<b>17</b>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17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18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	20
<b>제4편 일반사항</b> .....	<b>22</b>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22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23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24
제4장 그 밖의 사항 .....	28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30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	36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	38
〈별표 4〉 과실상계 등.....	39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39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	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	48

#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	4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7
제1장 배상책임 .....	7
제1절 대인배상 I .....	7
제2절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 .....	7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	10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	12
제3절 자기차량손해 .....	13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차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품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품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sup>(\*)</sup> 또는 장비<sup>(2)</sup>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sup>(3)</sup>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sup>(\*)</sup>하거나 장비<sup>(2)</sup>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다. 부속기계장치: 의뢰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락승업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sup>(\*)</sup>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sup>(\*\*)</sup>
    - (\*)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상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제1장 <sup>1)</sup>배상책임

#### 제1절 대인배상 I

#####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 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sup>2)</sup>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 I」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sup>3)</sup>기명피보험자
2. <sup>4)</sup>친족피보험자
3. <sup>5)</sup>승낙피보험자
4. <sup>6)</sup>사용피보험자
5. <sup>7)</sup>운전피보험자

#####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 제6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 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sup>8)</sup>기명피보험자
2. <sup>9)</sup>친족피보험자

-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의 3가지 보장종목으로 구성함
- 2)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 3)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 4)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실립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 5)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 6)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게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 7)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 8)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 9)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실립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3. <sup>10</sup>승낙피보험자. 다만, <sup>11</sup>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sup>12</sup>사용피보험자
5. <sup>13</sup>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sup>14</sup>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sup>15</sup>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sup>16</sup>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sup>17</sup>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sup>18</sup>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sup>19</sup>휴대품에 생긴 손해

10)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11)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입업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함  
 12)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게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13)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14) 임대차계약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5)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16)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함  
 17)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8)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9)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sup>20)</sup>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sup>(*)</sup> 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sup>(\*)</sup>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등차가 「대인배상 I」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sup>21)</sup>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TIP.**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 ① 피보험자 본인이<sup>22)</sup>음주운전이나<sup>23)</sup>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

20)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sup>(\*)</sup>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sup>2)</sup>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강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21)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

2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23)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함

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I · II」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I」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제1절 자기신체사고

####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sup>1)</sup>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제13조(피보험자)

-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up>24)</sup>기명피보험자
  2. <sup>25)</sup>친족피보험자
  3. <sup>26)</sup>승낙피보험자. 다만, <sup>27)</sup>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sup>28)</sup>사용피보험자
  5. <sup>29)</sup>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의 <sup>30)</sup>부모, <sup>31)</sup>배우자, <sup>32)</sup>자녀

####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4)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25)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실령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26)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27) 자동차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입승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함  
 28)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29)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30) 부모 : 양부모  
 31)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32)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sup>33)</sup>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sup>34)</sup>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합니다.

####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후유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sup>35)</sup>(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4. 다만, 위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33) 임대차계약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일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34)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35) 공제계약 :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한 계약으로 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계약

-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손해<sup>(\*)</sup>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sup>(\*\*)</sup>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승낙피보험자. 다만, <sup>36)</sup>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손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sup>37)</sup>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sup>38)</sup>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sup>(\*)</sup>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sup>(\*)</sup>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36)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입승업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함

37) 임대차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38)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TIP.**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대인배상 I」(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sup>(\*)1)</sup>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sup>39)</sup>부속품과 <sup>40)</sup>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위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는 다음의 손해를 말합니다
  - 가. 타차<sup>(\*\*2)</sup>와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 나.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경미한 손상<sup>(\*\*3)</sup>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9)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sup>(\*\*1)</sup> 또는 정비<sup>(\*\*2)</sup>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sup>(\*\*3)</sup>를 포함함.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함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sup>(\*\*1)</sup>하거나 정비<sup>(\*\*2)</sup>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정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정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40) 부속기계장치 : 의류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정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

**TIP.**

-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 (\*2) 타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발생시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3)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외장부품의 손상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급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sup>41)</sup>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sup>42)</sup>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급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품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풍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비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타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손손의 경우는 제외하며 타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sup>43)</sup>무면허운전, <sup>44)</sup>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sup>45)</sup>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sup>46)</sup>.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1) 임대차계약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42)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43)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항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는 것

44)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TIP.**

-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임차인이 법인이면 그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피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	----------------	---	----	---	-----------------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TIP.**

(\*1) '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7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17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18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20
제4편 일반사항	22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22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3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24
제4장 그 밖의 사항	28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30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36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38
〈별표 4〉 과실상계 등	39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39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48

##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급 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결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손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sup>45)</sup>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45)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sup>46)</sup>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46) 항변 : 민사 소송법에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신청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별개의 사항을 주장하는 일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sup>47)</sup>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 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 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 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 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 험금을 분담합니다.

-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 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sup>48)</sup>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조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47)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  
 48)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sup>49)</sup>무면허운전이나 <sup>50)</sup>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sup>51)</sup>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나. <sup>52)</sup>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경,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sup>53)</sup>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sup>54)</sup>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sup>55)</sup>가입료나 가입행을 면하기 위한 <sup>56)</sup>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sup>57)</sup>양도하여야 합니다.

49)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항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함

50)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51) 마약 또는 약물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52)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입승용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을 말함

53) 중재 : 분쟁에 끼여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54)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

55) 가입료 :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56) 공탁금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

57) 양도 :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 제4편 일반사항

###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sup>(\*)</sup>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분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sup>88)</sup>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TIP.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58)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사고당 2016.3.31일 이전 1천만원, 2016.4.1일 이후 2천만원 보상한도). 단,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II」(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도 의무보험임.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 철회)**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전문보험계약자<sup>(\*)</sup>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2. 청약할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TIP.**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sup>(*)</sup>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TIP.**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령,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① 보험계약자는 <sup>59)</sup>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59)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사고당 2016.3.31일 이전 1천만원, 2016.4.1일 이후 2천만원 보상한도). 단,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Ⅱ」(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도 의무 보험 임.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자동차의 <sup>60)</sup>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자동차의 <sup>61)</sup>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 제48조(피보험자자동차의 양도)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자동차의 양수인에게 <sup>62)</sup>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sup>63)</sup>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 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 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자동차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은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제49조(피보험자자동차의 교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자동차를 폐차 또는 <sup>64)</sup>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sup>65)</sup>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은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60) 양수인 : 타인의 권리,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사람

61) 양도 :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62) 승계 :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

63) 매매계약 :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짐으로써 성립하는 약속

64) 양도 :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65) 인가 : 인정하여 허가함

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text{기납입보험료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 : 366)}$$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sup>66)</sup>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66)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사고당 2016.3.31일 이전 1천만원, 2016.4.1일 이후 2천만원 보상한도). 단,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II」(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도 의무보험임.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을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 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sup>67)</sup>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67)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4장 그 밖의 사항

### 제55조(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sup>68)</sup>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 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 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제58조(예금보험기법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sup>69)</sup>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68) 신의성실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69) 예금자보호법

- ① 보험계약자 '개인(개인사업자포함)'인 경우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 ② 보험계약자 '법인'인 경우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지 않음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sup>70)</sup>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용어  
정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행위  
금지

보험  
계약  
자  
피  
보  
험  
자  
손  
해  
배  
상  
청  
구  
권  
자

분  
쟁  
조  
정  
위  
원  
회

관  
할  
법  
원

보  
험  
금  
지  
급  
기  
준

70) 조정 :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목 차

<b>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b> .....	<b>55</b>
1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55
2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	55
<b>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b> .....	<b>56</b>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3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6
4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6
5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7
6 운전자연령 만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8
7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8
8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9
9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0
10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0
11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만4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	61
12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만5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	62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1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2
14 Plus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63
15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3
16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64
17 원플러스원(One Plus One) 한정운전 특별약관 .....	65
18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	65
<b>제3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b> .....	<b>67</b>
제1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 관련	
19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67
20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	68
20-1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 특별약관 .....	70
21 주말·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	71



제2장 자기차량손해 보상 관련	
22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73
23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74
24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75
25 신차가액보상담보 확장 특별약관	76
26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77
27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77
<b>제4편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b>	<b>79</b>
28 벌금비용(실손형) 특별약관	79
29 형사합의지원(실손형) 특별약관	80
30 방어비용(실손형) 특별약관	82
<b>제5편 긴급출동서비스</b>	<b>85</b>
31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85
32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별약관	86
<b>제6편 기타</b>	<b>89</b>
3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89
33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90
34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93
35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94
36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95
37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5
38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95
39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96
40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98
41 나눔 특별약관	99
42 마일리지(선할인) 특별약관	101
43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	103
44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104
45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5
46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 특별약관	107
47 참사랑자녀 특별약관	108
48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109
49 지정정비업체 입고우대 특별약관	110
50 마이크즈 할인 특별약관	110
51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111
52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12

#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 55

- ①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55
- ②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 55

## 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 56

###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 ③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6
- ④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6
- ⑤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7
- ⑥ 운전자연령 만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8
- ⑦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8
- ⑧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9
- ⑨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0
- ⑩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0
- ⑪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만4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 61
- ⑫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만5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 62

###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 ⑬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2
- ⑭ Plus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3
- ⑮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3
- ⑯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64
- ⑰ 원플러스원(One Plus One) 한정운전 특별약관 ..... 65
- ⑱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 65

##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 1]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2]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건수가 월평균 25건 이상이고 그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료의 정산)

- ①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보험료는 보험료 정산약정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정산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미정산되었을 때에는 정산기일의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미정산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제3조(회사의 책임개시)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상의 책임개시일로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 ③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세이상으로 <sup>72)</sup>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④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72) 한정 :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를 제한하여 정함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운전자연령 만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

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43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3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3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0]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



- 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1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만4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30세에서 만49세 사이의 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미만의 자 또는 만50세이상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에 만49세인 자가 보험기간 중 만50세가 되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 또는 만50세이상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미만 또는 만50세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만5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30세에서 만59세 사이의 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미만의 자 또는 만60세이상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에 만59세인 자가 보험기간 중 만60세가 되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 또는 만60세이상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미만 또는 만60세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4) Plus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및 ⑦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5)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6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7 원플러스원(One Plus One)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및 그의 지명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 (1) 이 약관에서 그(기명피보험자)의 지명 1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지명하는 1인을 말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 및 그 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 (2) 위 '(1)'에서 규정한 그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의 지명 1인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 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 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 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 해담보 추가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8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허락한 임시운전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 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선택한 임시운전 가능 기간에 한하여 해당 승낙피보 험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3조(임시운전 가능 기간)

이 보험계약의 만료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체결한 경우에 기명피보험자가 요청한 기간(1일 이상, 30일 이하 요청개시 일 24시부터 요청만료일 24시 이전까지 효력 유지)을 임시운전 가능 기간으로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제3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 67

### 제1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 관련

19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67
20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68
20 - 1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 특별약관	70
21	주말 · 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71
22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73
23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74
24	신차기액보상담보 특별약관	75
25	신차기액보상담보 확장 특별약관	76
26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77
27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77

## 제4편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 ..... 79

28	벌금비용(실손형) 특별약관	79
29	형사합의지원(실손형) 특별약관	80
30	방어비용(실손형) 특별약관	82

## 제3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 ㉑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sup>(\*)</sup>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1장 제7조(피보험자)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간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boxed{\text{공제액}} = \boxed{\text{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boxed{\text{자동차상해 보상액}} - \boxed{\text{실제 손해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실제손해액이란 보통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과 「대인배상」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과 「대인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0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운전자(기명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자동차(원동기를 붙인 자전거를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 1. 운전자의 입원 또는 구속기간동안 하루 1만원씩의 생계비를 드립니다.
  -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2천만원을 한도로 드립니다.
  - 3. 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경우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1백만원을 드립니다.
  - 4.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1년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드립니다.
  - 5.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후유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을 드립니다.
- ③ 동일한 사고로 전항의 보험금을 두 가지 이상 드려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합친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드릴 경우에는 이미 드린 후유장애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 2.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 3.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 4.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5.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6.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② 위 제1조(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료의 환급)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 무효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을,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4조(사고발생시의 의무)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구속영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에 의한 중요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 ① 운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사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안에 또는 회사가 승인한 유예기간 안에 다음의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진단서
  4. 법원의 판결문 사본
- ② 회사는 운전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할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위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3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위 제3항 또는 위 제4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금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피보험자의 이익제기로 지연된 때와 기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드리지 않습니다.

### 제6조(가지급보험금의 청구)

운전자는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범위안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가지급 보험금청구서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7조(운전자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 ①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제8조(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시에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자동차보험계약도 양수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제9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후유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90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8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70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6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5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4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30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24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18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14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6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4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에 의함

**20-1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부상하여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별표〉의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1급	200만원	200만원
2급	167만원	167만원	250만원
3급	140만원	140만원	210만원
4급	120만원	120만원	180만원
5급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6급	87만원	87만원	130만원
7급	73만원	73만원	110만원
8급	60만원	60만원	90만원
9급	47만원	47만원	70만원
10급	40만원	40만원	60만원
11급	33만원	33만원	50만원
12급	20만원	20만원	30만원
13급	13만원	13만원	20만원
14급	7만원	7만원	1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 21 주말·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사망 1억원·후유장애 1억원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주말 및 휴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sup>(\*)</sup>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주말**은 금요일 18:00 ~ 월요일 08:00을 말하며 **휴일**은 ①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 ②근로자의 날 전일 18:00 ~ 익일 08:00의 시간을 말합니다. 상기의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주말 및 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정)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정)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정)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정)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 및 휴일 사망사고 위로금 :

상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주말 및 휴일 사망사고 위로금으로 피보험자당 '별표'의 주말 및 휴일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주말 및 휴일 후유장애 위로금 :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1~7급 판정을 받은 경우, 주말 및 휴일 후유장애 위로금으로 피보험자당 <별표>의 주말 및 휴일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는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손해액의 확정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주말 및 휴일 사망사고 위로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때
  - 2. 주말 및 휴일 후유장애 위로금 :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
- ③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3.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증거
- ④ 회사는 위 제3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4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위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주말 및 휴일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지급기준

1.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가입금액 1배 추가보장

구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사망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후유장애	1급	1,500만원	5,000만원
	2급	1,350만원	4,500만원
	3급	1,200만원	4,000만원
	4급	1,050만원	3,500만원
	5급	900만원	3,000만원
	6급	750만원	2,500만원
	7급	600만원	2,000만원

## 2.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가입금액 2배 추가보장

구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사망시	3,000만원	6,000만원	10,000만원
후유장애	1급	3,000만원	6,000만원
	2급	2,700만원	5,400만원
	3급	2,400만원	4,800만원
	4급	2,100만원	4,200만원
	5급	1,800만원	3,600만원
	6급	1,500만원	3,000만원
	7급	1,200만원	2,400만원

## 22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교통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되었을 때에는 주행불능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말합니다)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명피보험자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동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sup>73</sup>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 ③ 회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전손시 제반 비용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 제3조(대체교통비용 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대체교통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가능한 경우
    - 가.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아니합니다.
    - 나.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3.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을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 제4조(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매사고에 대하여 20만원 한도내에서 운반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73) 원격지 : 멀리 떨어진 곳

- ② 위 제1항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된 것에 한정됩니다.

**제5조(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최대 100만원)를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차량을 취득할 때 납입한 취·등록세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㉓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동차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이하 '회사'라 합니다)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카를 제공합니다. 다만, 동종의 렌트카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종의 렌트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의 형태 등이 유사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렌트카의 제공기간 및 비용 지급)**

- ① 회사가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렌트카의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 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렌트카를 제공할 때 대여비용의 부담은 회사로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피보험자에게 렌트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제공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렌트카를 사용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위 제1항의 렌트카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를 지급합니다.

- ⑤ 회사가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도장소 및 회수장소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장소로 합니다.

#### 제5조(렌트카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 ① 회사는 제2조(보상내용)에 의한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렌트카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렌트카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제1항의 손해 중 렌트카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 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서 보상하는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경우에 보상한도는 렌트카 제공 전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의 보상책임 기간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렌트카를 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때까지로 합니다.
- ④ 위 제1항의 경우에 렌트카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렌트카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4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로서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보험가입금액의 70%를 초과하는 손해(수리비에 한합니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조)로 간주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단,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2.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 제5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가 피해를물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를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 제6조(보험가입금액의 변경)

-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5 신차기액보상담보 확장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로서 **최초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보험가입금액의 60%를 초과하는 손해(수리비에 한합니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조)로 간주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단,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2.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 제5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를물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를물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를물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를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 제6조(보험가입금액의 변경)

-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6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동차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로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차량을 취득할 때 납입한 취·등록세를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7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하는 사고 이외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티몰체<sup>1)</sup>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sup>2)</sup>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②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③ 경미한 손상<sup>3)</sup>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TIP.**

- (\*1)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총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단,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의 '타차'는 제외),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이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 (\*2)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3)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외장부품의 손상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손해
  - 단,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호는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나.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sup>(\*)</sup>로 인한 손해

**TIP.**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제4편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

### ㉘ 벌금비용(실손형)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한 벌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가 <sup>74)</sup>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회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 제5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74) 마약 또는 약물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제6조(보험금의 지급)**

각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형사합의지원(실손형)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인배상 II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해자가 사망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
  - 3. 위 제2호 이외의 사고로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위 제1항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탁을 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공탁자가 <sup>75)</sup>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③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정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형사합의지원금은 상해구분에 따라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구분	사망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	상해등급 4급 내지 7급
보상한도	3,000만원	1,500만원	300만원

주)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 ⑤ 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4.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⑥ 위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75) 공탁금: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

- 진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4.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회사는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피해자의 상해로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8.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9. 피보험자가 7)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회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제6조(보험금의 지급)**

각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대위)**

76) 마약 또는 약물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사고처리 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타

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0) 방어비용(실손형)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인배상 II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2.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정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단, 피보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급이나 대기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가 77)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회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부담)**

77) 마약 또는 약물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이 특별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 제6조(보험금의 지급)

각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7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제5편 긴급출동서비스 ..... 85

㉓1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 85

㉓2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별약관 ..... 86

### 제6편 기타 ..... 89

㉓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89

㉓3-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 90

㉓4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 93

㉓5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94

㉓6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95

㉓7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95

㉓8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 95

㉓9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 96

㉓0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 98

㉓1 나눔 특별약관 ..... 99

㉓2 마일리지(선할인) 특별약관 ..... 101

㉓3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 ..... 103

㉓4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104

㉓5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 105

㉓6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 특별약관 ..... 107

㉓7 참사랑자녀 특별약관 ..... 108

㉓8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 109

㉓9 지정정비업체 입고우대 특별약관 ..... 110

㉓0 마이키즈 할인 특별약관 ..... 110

㉓1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111

㉓2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112



## 제5편 긴급출동서비스

### 31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3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으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추가적인 구난정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7.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 중 접지면에 펑크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펑크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서비스제공은 1개의 펑크부위에 한하며, 펑크부위가 2군데 이상인 경우 추가 부위에 대한 수리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 단, 피보험자동차의 특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나 '4.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를 대신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신(제1호)과(제2호)의(보상내용) 및 자기(제1호)의(보상내용) 및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 ②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긴급 견인 및 구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신 제공해 드립니다.
- ④ 위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특약계약의 종료)**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② 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아래 표에 명시된 이용 횟수 이상 받은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이용 횟수	특약의 보험기간	이용 횟수
2개월 미만	1회	8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4회
2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2회	10개월 이상	5회
5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3회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제외)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②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③ 사전에 파손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후 부득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④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⑤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상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2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p>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p> <p>단, 5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p>
2. 비상급유 서비스	<p>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5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해 드립니다.</p>
3. 배터리충전 서비스	<p>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p> <p>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p>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p>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p> <p>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p>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p>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보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p> <p>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어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p>
6. 긴급구난 서비스	<p>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추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p>
7.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p>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 중 접지면에 펑크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펑크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서비스제공은 1개의 펑크부위에 한하며, 펑크부위가 2군데 이상인 경우 추가 부위에 대한 수리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p> <p>나. 단, 피보험자동차의 특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나 '4.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를 대신 제공하여 드립니다.</p>

- ②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긴급 견인 및 구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신 제공해 드립니다.
- ④ 위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특약계약의 종료)**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② 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아래 표에 명시된 이용 횟수 이상 받은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이용 횟수	특약의 보험기간	이용 횟수
2개월 미만	1회	8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4회
2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2회	10개월 이상	5회
5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3회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제외)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②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③ 사전에 파손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후 부득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④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⑤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상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제6편 기타

## 3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1 제외) 및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sup>\*)</sup>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TIP.

(\*)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급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제4조(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3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운전 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단,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sup>78)</sup>부속품과 <sup>79)</sup>부속기계 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아니합니다.)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제3의 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 (1)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중승합자동차 및 경·4중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 (2) 사업용자동차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자로부터 7일이하 대여받은 자동차
  - ②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③ 렌트카담보 특별약관에 의해 제공받은 대여자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것
  - ④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에서 정의하는 보험대차가 아닌 것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 계약의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인 다른 자동차와 제3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의 차량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78)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sup>(\*)</sup> 또는 장비<sup>(2)</sup>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sup>(3)</sup>를 포함함.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함.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sup>(\*)</sup>하거나 장비<sup>(2)</sup>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9)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7. 다른 자동차에 생긴 흠, 마모,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8.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9. 도난으로 인한 손해
  -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 11.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2.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13. 다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14. 피보험자가 <sup>80)</sup>미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15. 소유권이 유보된 <sup>81)</sup>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4.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6.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7. 사고발생시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
  - 8. 다른 자동차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 이외에 휴차 혹은 휴업으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기령피보험자
- 2. 기령피보험자의 배우자

**제5조(손해액의 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값을 공제합니다.
-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80) 미약 또는 약물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미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81) 매매계약 :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짐으로써 성립하는 약속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 ④ 다른 자동차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6조(비용)**

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7조(보상한도)**

-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 ②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상한도가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제2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3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위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 ①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 ② 위 제1항의 경우 보상한도가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상한도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11조(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 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손해<sup>(\*)</sup>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②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이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피보험자 1인당 3억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에서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이하 '초과손해액'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 1인당 3억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sup>82)</sup>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2)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입승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을 말함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의 보상  
 사고처리 시 주의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타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근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sup>(\*)</sup>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sup>(\*)</sup>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TIP**

(\*)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회사는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초과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5)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 I 및 제2절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sup>83)</sup>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 I 및 제2절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sup>84)</sup>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내용)**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 I 및 제2절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고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3.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3) 양도 :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84) 양수인 : 타인의 권리,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사람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 ① 회사는 제3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85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양수인은 위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36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2종승용 자동차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빌려 준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37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2종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 38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자의 종사자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 ① 기령피보험자의 피용자

- ② 대리운전자를 제외한 자동차 취급업자.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 ② 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음주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시적 대리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손해
2.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3.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의 손해
4. 대리운전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9)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2.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4. '마일리지(선할인) 특별약관' 또는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동차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로 당해 비운행 약정요일 당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여부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 (3)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이라 함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서 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위 제1항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의 정보를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6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3일 이하(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하로 합니다)인 경우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단,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 '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 ② 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4일 이상(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합니다)인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자동차를 운행한 일수에 무관하게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④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2.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3.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
  4.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⑤ 보험계약자는 위 제1항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적용보험료의 (간금출동서비스특약 제외)
정산금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0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1호 다음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sup>86)</sup>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2. 위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제2호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위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86)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헨더, 후드,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리드,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후방 센서
  - ②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 (2) 이 특별약관에서 새 부품품가격이라 함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동차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신부품품가격(부가세 제외)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품품 가격과의 차액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품품 가격과의 차액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1항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2.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2항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제5조(보험금의 환입)**

- ①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품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회사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1 나눔 특별약관****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중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30세 이상인 경우

- 나.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것 (단,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반드시 1대여야 함)
- 다.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될 것
- 라. 기명피보험자에게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단, 기명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65세 이상이고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경우는 제외함
- 마.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1~3급 장애인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 나.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것 (단,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반드시 1대여야 함)
  - 다.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될 것
- 4.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이하 이면서,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을 보험가입 하는 경우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제1조(가입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1호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2호의 경우
  - 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아래의 소득 입증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2) 사업소득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단, 사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증명원
    - (3)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4)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원
    - (5)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 나. 부양가족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 다. 자동차등록증
  - 라.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3호의 경우
  - 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다만, 갱신계약으로 직전계약 체결 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부양자 및 동거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4호의 경우
  - 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2 마일리지(선할인)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동차를 연간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이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2.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을 가입한 계약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사진 위변조 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은 경우
4.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보험료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주행거리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에서 최초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운행정보의 송부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 이전 1개월 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 이전 7일 부터 교체된 날 이후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교체된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및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② 주행거리 준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기간 동안 운행하기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계좌정보 또는 신용카드 정보의 고지

1.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의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위 제1호의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회사가 주행거리 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확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정보가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지체없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및 취소)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 후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3호 또는 제4호의 가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안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피보험자동차와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b>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b>	
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로 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 까지의 기간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제휴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료 할인 및 정산 등)**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회사에 전송하여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차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보험료를 다시 환급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및 취소)의 규정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무효 또는 취소처리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④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4조(연간 주행거리 산출)에 따라 산출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 미만 또는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⑤ 회사는 위 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에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대인 I · II, 대물 및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자손(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 자차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의
2,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2,000km초과 3,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3,000km초과 5,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5,000km초과 9,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9,000km초과 12,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12,000km초과 15,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15,000km 초과	0%

### 43]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동차를 연간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이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2.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을 가입한 계약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사진 위변조 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은 경우
4.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보험료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주행거리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에서 최초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운행정보의 송부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 이전 1개월 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 이전 7일 부터 교체된 날 이후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교체된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및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② 주행거리 준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기간 동안 운행하기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계좌정보 정보의 고지

1.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료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위 제1호의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회사가 주행거리 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및 취소)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 후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3호 또는 제4호의 가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안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피보험자동차와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로 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 까지의 기간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제휴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주행거리 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은행계좌번호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간 주행거리 정보가 15,000Km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정보가 15,00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대인 I·II, 대물 및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자손(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 자차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의
2,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2,000km초과 3,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3,000km초과 5,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5,000km초과 9,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9,000km초과 12,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12,000km초과 15,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15,000km 초과	0%

**44]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에게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에 따릅니다.
- ④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항에서 정한 동일 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② 위 제1항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특별약관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45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이하 '블랙박스'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블랙박스의 장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과거 3년 이내 회사가 요청한 블랙박스의 장착사진, 영상기록 정보 등을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및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블랙박스 장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블랙박스 제조사, 모델명, 부속품가액 등)에 대하여 알려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 장착여부를 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사진 또는 동영상상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블랙박스를 피보험자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 기록 정보를 회사가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자동차의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알려야하며,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자동차의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블랙박스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6]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직접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비정상적이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탑승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발생한 대중교통수단의 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승·하차(대중교통수단 또는 그 부속장치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제외함)하던 중 발생한 대중교통수단의 사고

####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 탑승중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 객실내의 좌석 및 손잡이 등이 있는 입석과 통로에 올라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외의 장소에 탑승하거나 또는 좌석 위에 올라타 서 있는 경우, 손잡이 등 부속장치에 매달려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이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탑승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반의 대중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3.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상태로 인한 사고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고
5. 피보험자가 시험용(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 중인 대중교통자동차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
6. 대중교통수단의 설치, 수리, 점검, 정비, 청소작업 등 업무를 수행 하던중 발생한 사고
7. 대중교통수단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로서 업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4.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보험회사가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인당 1억 원을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후유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 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 1억 원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①항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금 청구절차 및 제출서류는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해당 항목을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7) 참사랑자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또는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1)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19세 이하의 자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19세 이하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녀학자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만1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자금으로 1사고당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 2. 자녀부상 위로금
 

피보험자의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7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의 '자녀부상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3. 자녀성형 위로금
 

피보험자의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을 한도로, 1cm당 10만원의 '성형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만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 ③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4. 자녀고도후유장애 위로금

피보험자의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고도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애를 말함)가 남은 경우에 1인당 5천만원의 자녀고도후유장애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지급되는 자녀학자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령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8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장 제2절 대물배상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장 제2절 대물배상을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의무보험과 관련하여 보통약관 제1장 제2절 대물배상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1사고당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한도	1사고당 보험금의 종류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 ② 이 특별약관의 대물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제2절 대물배상과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간접출동서비스

기 타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3절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9 지정정비업체 입고우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자기부담금을 30%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회사가 안내한 지정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항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20%로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지정정비업체 :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정비공장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시 회사가 안내하여 드리는 정비공장을 말합니다.

-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정비업체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이 불가능하고, 사고장소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지정정비업체가 없거나 지정정비업체까지 무상견인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이 가능하고, 사고장소 또는 피보험자의 거주지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지정정비업체가 없는 경우
  3. 회사가 안내한 지정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3조(적용배제)**

보험금 청구 이전에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피보험자가 회사의 지정정비업체 입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0 마이키즈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가 만 12세 이하(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작일자 기준)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출산예정

인 자녀가 있는 경우

- ②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란

1. 법률상의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2. 양자녀, 계자녀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명의의 임신확인서 또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태아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1조(가입대상) ①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함)
  2. 출산 예정인 자녀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신확인일 및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류(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② 회사가 '제1조(가입대상) ①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가입자격 조건의 증명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 제3조(적용기간)

- ①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다만, 보험기간 중도에 '제1조(가입대상) ①항'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이 특약의 적용시작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일 경우 임신확인일
  2. 재혼 또는 입양의 경우 호적등재일
-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④ 위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가입대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4조(준용기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1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제2조(보상내용)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해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3)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1)'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사업업자의 타당한 영업 손해에 대해

서는 보통약관(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인정 기간은 대물배상 지급기준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 (4)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5) 위 '(1)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 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손상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조,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제3조,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인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2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2.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로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2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3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환입)**

-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때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 공급이 곤란하거나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OEM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액)을 초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MEMO



MEMO





MEMO



MEMO

##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목 차

<b>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b> .....	<b>55</b>
①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55
②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	55
<b>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b> .....	<b>56</b>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③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6
④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6
⑤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7
⑥ 운전자연령 만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8
⑦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8
⑧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9
⑨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0
⑩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0
⑪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만4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61
⑫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만5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62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⑬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2
⑭ Plus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63
⑮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3
⑯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64
⑰ 원플러스원(One Plus One) 한정운전 특별약관 .....	65
⑱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	65
<b>제3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b> .....	<b>67</b>
제1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 관련	
⑲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67
⑳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	68
㉑-1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 특별약관 .....	70
㉒ 주말·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	71

제2장 자기차량손해 보상 관련	
22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73
23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74
24 신차기액보상담보 특별약관	75
25 신차기액보상담보 확장 특별약관	76
26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77
27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77
<b>제4편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b>	<b>79</b>
28 벌금비용(실손형) 특별약관	79
29 형사합의지원(실손형) 특별약관	80
30 방어비용(실손형) 특별약관	82
<b>제5편 긴급출동서비스</b>	<b>85</b>
31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85
32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별약관	86
<b>제6편 기타</b>	<b>89</b>
3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89
33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90
34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93
35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94
36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95
37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5
38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95
39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96
40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98
41 나눔 특별약관	99
42 마일리지(선할인) 특별약관	101
43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	103
44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104
45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5
46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손해 특별약관	107
47 참사랑자녀 특별약관	108
48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109
49 지정정비업체 입고우대 특별약관	110
50 마이크즈 할인 특별약관	110
51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111
52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12

#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 55

- 1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55
- 2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 55

## 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 56

###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 3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6
- 4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6
- 5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7
- 6 운전자연령 만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8
- 7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8
- 8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9
- 9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0
- 10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0
- 11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만4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 61
- 12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만5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 62

###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 1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2
- 14 Plus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3
- 15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3
- 16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64
- 17 원플러스원(One Plus One) 한정운전 특별약관 ..... 65
- 18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 65

##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 ①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료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②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건수가 월평균 25건 이상이고 그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정산특별약관정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료의 정산)

- ①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보험료는 보험료 정산약정 특별약관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정산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료정산특별약관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미정산되었을 때에는 정산기일의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미정산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제3조(회사의 책임개시)

보험료정산특별약관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상의 책임개시일로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 ③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세이상으로 <sup>72</sup>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④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72) 한정 :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를 제한하여 정함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약관  
단일법률

운전자연령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⑥ 운전자연령 만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⑦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

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⑧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보통약관  
단일법률

운전자연령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권한

사고처리  
비용되는  
비용

가입  
출동  
서비스

기  
타

**9)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43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3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3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0)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

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만4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0세에서 만49세 사이의 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미만의 자 또는 만50세이상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에 만49세인 자가 보험기간 중 만50세가 되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 또는 만50세이상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미만 또는 만50세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보통약관  
단일일별

운전자연령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권

사고처리  
비용

기급출동서비스

기  
타

## 12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만5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30세에서 만59세 사이의 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미만의 자 또는 만60세이상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에 만59세인 자가 보험기간 중 만60세가 되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I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동차를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 또는 만60세이상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미만 또는 만60세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 Plus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및 ⑦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5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보통약관  
납입방법

운전자  
능지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권

사고처리  
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상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6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7 원플러스원(One Plus One)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및 그의 **지명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 (1) 이 약관에서 그(기명피보험자)의 **지명 1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지명하는 1인을 말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 및 그 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 (2) 위 '(1)'에서 규정한 그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의 지명 1인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 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 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 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 해담보 추가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8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허락한 임시운전자가(이하 '승낙피보험자'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 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선택한 임시운전 가능 기간에 한하여 해당 승낙피보 험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3조(임시운전 가능 기간)

이 보험계약의 만료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체결한 경우에 기명피보험자가 요청한 기간(1일 이상, 30일 이하 요청개시 일 24시부터 요청만료일 24시 이전까지 효력 유지)을 임시운전 가능 기간으로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제3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 67

#### 제1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 관련

19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67
20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68
20-1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 특별약관	70
21	주말·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71

22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73
23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74
24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75
25	신차가액보상담보 확장 특별약관	76
26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77
27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77

### 제4편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 ..... 79

28	벌금비용(실손형) 특별약관	79
29	형사합의지원(실손형) 특별약관	80
30	방어비용(실손형) 특별약관	82

### 제3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 19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sup>(\*)</sup>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1장 제7조(피보험자)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boxed{\text{지급보험금}} = \boxed{\text{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동차상해 보상액	-	실제 손해액
-----	---	---------------------------------------	---	-----------	---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실제손해액이란 보통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과 「대인배상」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과 「대인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0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운전자(기명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자동차(원동기를 붙인 자전거를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 1. 운전자의 입원 또는 구속기간동안 하루 1만원씩의 생계비를 드립니다.
  -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2천만원을 한도로 드립니다.
  - 3. 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경우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1백만원을 드립니다.
  - 4.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1년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드립니다.
  - 5.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후유장애급별 보험 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을 드립니다.
- ③ 동일한 사고로 전항의 보험금을 두 가지 이상 드려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합친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드릴 경우에는 이미 드린 후유장애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 2.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 3.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 4.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5.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6.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② 위 제1조(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료의 환급)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 무효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을,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4조(사고발생시의 의무)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구속영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에 의한 중요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 ① 운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사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안에 또는 회사가 승인한 유예기간 안에 다음의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진단서
  4. 법원의 판결문 사본
- ② 회사는 운전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위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3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위 제3항 또는 위 제4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금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피보험자의 이의제기로 지연된 때와 기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6조(가지급보험금의 청구)

운전자는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범위안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7조(운전자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 ①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제8조(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시에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자동차보험계약도 양수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제9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후유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90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8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70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6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5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4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30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24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18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14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6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4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에 의함

**20-1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부상하여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별표〉의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1급	200만원	300만원
2급	167만원	250만원	
3급	140만원	210만원	
4급	120만원	180만원	
5급	100만원	150만원	
6급	87만원	130만원	
7급	73만원	110만원	
8급	60만원	90만원	
9급	47만원	70만원	
10급	40만원	60만원	
11급	33만원	50만원	
12급	20만원	30만원	
13급	13만원	20만원	
14급	7만원	1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 21 주말·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사망 1억원·후유장애 1억원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주말 및 휴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주말**은 금요일 18:00 ~ 월요일 08:00를 말하며 **휴일**은 ①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 ②근로자의 날 전일 18:00 ~ 익일 08:00의 시간을 말합니다. 상기의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주말 및 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정)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정)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정)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정)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 및 휴일 사망사고 위로금 :  
상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주말 및 휴일 사망사고 위로금으로 피보험자당 '별표'의 주말 및 휴일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령손해의 보상금액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타



2. 주말 및 휴일 후유장애 위로금 :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1~7급 판정을 받은 경우, 주말 및 휴일 후유장애 위로금으로 피보험자당 '별표'의 주말 및 휴일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는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손해액의 확정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주말 및 휴일 사망사고 위로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때
  - 2. 주말 및 휴일 후유장애 위로금 :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
- ③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3.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증거
- ④ 회사는 위 제3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4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위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주말 및 휴일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지급기준

1.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가입금액 1배 추가보장

구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사망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후유장애	1급	1,500만원	3,000만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 2.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가입금액 2배 추가보장

구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사망시	3,000만원	6,000만원	10,000만원
후유장애	1급	3,000만원	6,000만원
	2급	2,700만원	5,400만원
	3급	2,400만원	4,800만원
	4급	2,100만원	4,200만원
	5급	1,800만원	3,600만원
	6급	1,500만원	3,000만원
	7급	1,200만원	2,400만원

## ㉓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교통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되었을 때에는 주행불능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말합니다)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명피보험자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sup>73)</sup>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 ③ 회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손시 제반 비용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 제3조(대체교통비용 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대체교통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 가.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외국인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아니합니다.
    - 나.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3.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을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 제4조(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매사고에 대하여 20만원 한도내에서 운반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73) 원격지 : 멀리 떨어진 곳

- ② 위 제1항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제5조(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차량을 취득할 때 납입한 취·등록세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㉓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동차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이하 '회사'라 합니다)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카를 제공합니다. 다만, 동종의 렌트카를 구할 수 없는 최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종의 렌트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의 형태 등이 유사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렌트카의 제공기간 및 비용 지급)**

- ① 회사가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렌트카의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렌트카를 제공할 때 대여비용의 부담은 회사로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피보험자에게 렌트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제공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렌트카를 사용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위 제1항의 렌트카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를 지급합니다.

⑤ 회사가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도장소 및 회수장소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장소로 합니다.

제5조(렌트카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 ① 회사는 제2조(보상내용)에 의한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렌트카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렌트카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제1항의 손해 중 렌트카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 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서 보상하는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경우에 보상한도는 렌트카 제공 전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의 보상책임 기간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렌트카를 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때까지로 합니다.
- ④ 위 제1항의 경우에 렌트카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렌트카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4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로서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보험가입금액의 70%를 초과하는 손해(수리비에 한합니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조)로 간주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단,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1.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 2. 배상 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제5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

- 보험료 납입방법
- 운전기록지에 대한 제한
-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금액
- 사고처리 시 사용되는 비용
- 지급출동서비스
- 기타

회사가 피해를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 제6조(보험가입금액의 변경)

-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5 신차가액보상담보 확장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로서 **최초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일지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보험가입금액의 60%를 초과하는 손해(수리비에 한합니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조)로 간주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단,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2.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집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 제5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가입금액의 변경)**

-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6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동차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로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차량을 취득할 때 납입한 취·등록세를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7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하는 사고 이외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타물체<sup>(\*)</sup>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sup>(\*\*)</sup>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②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③ 경미한 손상<sup>(\*\*\*)</sup>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TIP.**

- (\*1)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단,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의 '타차는 제외),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이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 (\*2)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3)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외장부품의 손상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손해
  - 단,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호는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나.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sup>(\*)</sup>로 인한 손해

**TIP.**

-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제4편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

### ㉘ 벌금비용(실손형)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인배상 II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한 벌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8.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9. 피보험자가 <sup>74)</sup>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회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재(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 제5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74) 마약 또는 약물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보통약관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권한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

가입출동서비스

기  
타



**제6조(보험금 지급)**

각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㉔ 형사합의지원(실손형)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해자가 사망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
  - 3. 위 제2호 이외의 사고로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위 제1항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탁을 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공탁자가 75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③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형사합의지원금은 상해구분에 따라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구분	사망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	상해등급 4급 내지 7급
보상한도	3,000만원	1,500만원	300만원

주)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한

- ⑤ 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4.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⑥ 위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75) 공탁금: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

-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4.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회사는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피해자의 상해로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8.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9. 피보험자가 <sup>79</sup>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회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재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제6조(보험금의 지급)**

각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대위)**

76) 마약 또는 약물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취급손해의 보상권한

사고처리 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0 방어비용(실손형)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2.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정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단, 피보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가 77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회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재(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77) 마약 또는 약물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이 특별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제6조(보험금의 지급)**

각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보험료 납입일별

운전자능지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사고처리나 소송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5편 긴급출동서비스 .....	85
[31]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	85
[32]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별약관 .....	86
제6편 기타 .....	89
[3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89
[33]-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	90
[34]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	93
[35]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94
[36]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95
[37]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95
[38]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	95
[39]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	96
[40] 친환경자동차부품사용 특별약관 .....	98
[41] 나눔 특별약관 .....	99
[42] 마일리지(선할인) 특별약관 .....	101
[43]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 .....	103
[44]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104
[45]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	105
[46]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손해 특별약관 .....	107
[47] 참사랑자녀 특별약관 .....	108
[48]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	109
[49] 지정정비업체 입고우대 특별약관 .....	110
[50] 마이키즈 할인 특별약관 .....	110
[51]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111
[52]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112

## 제5편 긴급출동서비스

### ③1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우 3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어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기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어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추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7.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 중 접지면에 펑크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펑크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서비스제공은 1개의 펑크부위에 한하며, 펑크부위가 2군데 이상인 경우 추가 부위에 대한 수리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 단, 피보험자동차의 특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나 '4.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를 대신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긴급 견인 및 구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신 제공해 드립니다.
- ④ 위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특약계약의 종료)**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② 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아래 표에 명시된 이용 횟수 이상 받은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이용 횟수	특약의 보험기간	이용 횟수
2개월 미만	1회	8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4회
2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2회	10개월 이상	5회
5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3회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제외)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②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③ 사전에 파손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후 부득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④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⑤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상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2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5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연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5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 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추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7.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 중 접지면에 펑크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펑크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서비스제공은 1개의 펑크부위에 한하며, 펑크부위가 2군데 이상인 경우 추가 부위에 대한 수리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 단, 피보험자동차의 특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나 '4.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를 대신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긴급 견인 및 구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신 제공해 드립니다.
- ④ 위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보험금  
납입방법

운전가능지역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정착해)  
차기차량손해의 보상금액

사고처리 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제4조(특별계약의 종료)**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② 단,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아래 표에 명시된 이용 횟수 이상 받은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용 횟수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용 횟수
2개월 미만	1회	8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4회
2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2회	10개월 이상	5회
5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3회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자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제외)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②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③ 사전에 파손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후 부득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④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⑤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상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제6편 기타

### ③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험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1 제외) 및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sup>\*)</sup>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험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제4조(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3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운전 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단,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sup>78</sup>부속품과 <sup>79</sup>부속기계 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아니합니다.)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제3의 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1)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중승합자동차 및 경·4중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 사업용자동차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7일이하 대여받은 자동차
- ②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③ 렌트카담보 특별약관에 의해 제공받은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것
- ④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에서 정의하는 보험대차가 아닌 것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 계약의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인 다른 자동차와 제3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의 차량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78)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sup>(\*)</sup> 또는 정비<sup>(\*\*)</sup>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sup>(\*\*\*)</sup>를 포함함.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함.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sup>(\*)</sup>하거나 정비<sup>(\*\*)</sup>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정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9) 부속기계장치 : 의뢰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특성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정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다른 자동차에 생긴 흠, 마모,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2.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3. 다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4. 피보험자가<sup>80)</sup>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5. 소유권이 유보된<sup>81)</sup>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의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사고발생시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
  8. 다른 자동차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 이외에 휴차 혹은 휴업으로 인한 손해

### 제4조(피보험자)

-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제5조(손해액의 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값을 공제합니다.
-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차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80) 마약 또는 약물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81) 매매계약 :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써 성립하는 약속

합니다. 그러나, 새 부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 ④ 다른 자동차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 제6조(비용)

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제7조(보상한도)

-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 ②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상한도가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 제8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제2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3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위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9조(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0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 ①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 ② 위 제1항의 경우 보상한도가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상한도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 제11조(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응 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4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손해<sup>82)</sup>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②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이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피보험자 1인당 3억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에서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이하 '초과손해액'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 1인당 3억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sup>82)</sup>자동차 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2)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택승업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사용자 및 이들이 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을 말함

보통약관  
납입일별

운전기록지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차기취급업자의  
보상책임) 불

사고처리  
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타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sup>(\*)1)</sup>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sup>(\*)1)</sup>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TIP**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부담)**

회사는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초과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5)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 I 및 제2절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sup>83)</sup>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 I 및 제2절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sup>84)</sup>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내용)**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 I 및 제2절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고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3.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3) 양도 :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84) 양수인 : 타인의 권리,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사람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 ① 회사는 제3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sup>85)</sup>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양수인은 위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6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2종승용 자동차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빌려 준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37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2종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38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자의 종사자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85)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사고처리 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타



- ② 대리운전자를 제외한 자동차 취급업자.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 ② 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음주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시적 대리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손해
  2.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3.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의 손해
  4. 대리운전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9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2.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4. '마일리지(선합인) 특별약관' 또는 '마일리지(후합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동차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로 당해 비운행 약정요일 당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여부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 (3)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이라 함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서 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위 제1항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료)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료라 됩니다.

###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6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3일 이하(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하로 합니다)인 경우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단,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 ② 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4일 이상(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합니다)인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에 무관하게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④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2.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3.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
  4.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⑤ 보험계약자는 위 제1항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구분	적용보험료의 (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
정산금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0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1호 다목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sup>86)</sup>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2. 위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새 부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제2호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위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새 부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86) 부품명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헹더, 후드,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리드,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후방 센서
  - ②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 (2) 이 특별약관에서 새 부품품가격이라 함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동차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신부품품가격(부가세 제외)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보험개발원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품품 가격과의 차액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품품 가격과의 차액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1항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 2.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2항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제5조(보험금의 환입)

- ①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품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회사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1 나능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이 특별약관은 다음중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2.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30세 이상인 경우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지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손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사고처리 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타

- 나.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것 (단,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반드시 1대여야 함)
- 다.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될 것
- 라. 기명피보험자에게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단, 기명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65세 이상이고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경우는 제외함
- 마.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1~3급 장애인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 나.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것 (단,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반드시 1대여야 함)
  - 다.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될 것
- 4.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이하 이면서,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을 보험가입 하는 경우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제1조(가입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1호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2호의 경우
  - 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아래의 소득 입증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2) 사업소득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단, 사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증명원
    - (3)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4)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원
    - (5)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 나. 부양가족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 다. 자동차등록증
  - 라.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3호의 경우
  - 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다만, 갱신계약으로 직전계약 체결 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부양자 및 동거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4.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4호의 경우
    - 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2 마이리지(선할인)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동차를 연간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이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2.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을 가입한 계약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사진 위변조 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은 경우
4.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보험료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주행거리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에서 최초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운행정보의 송부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 이전 1개월 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 이전 7일 부터 교체된 날 이후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교체된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및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② 주행거리 준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기간 동안 운행하기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계좌정보 또는 신용카드 정보의 고지
  1.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의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위 제1호의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회사가 주행거리 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확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정보가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지체없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및 취소)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 후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3호 또는 제4호의 가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안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전 피보험자자동차와 교체후 피보험자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로 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 까지의 기간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제휴업체에서 피보험자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료 할인 및 정산 등)**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피보험자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회사에 전송하여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차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추정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보험료를 다시 환급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및 취소)의 규정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무효 또는 취소처리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추정합니다.
- ④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4조(연간 주행거리 산출)에 따라 산출한 피보험자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 미만 또는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⑤ 회사는 위 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에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대인 I·II, 대물 및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자손(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 자차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의
2,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2,000km초과 3,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3,000km초과 5,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5,000km초과 9,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9,000km초과 12,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12,000km초과 15,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15,000km 초과	0%

### 43 마이리지(후할인)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동차를 연간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이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2.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을 가입한 계약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사진 위변조 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은 경우
4.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보험료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주행거리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에서 최초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운행정보의 송부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 이전 1개월 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 이전 7일 부터 교체된 날 이후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교체된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및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② 주행거리 준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기간 동안 운행하기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계좌정보 정보의 고지
  1.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료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위 제1호의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회사가 주행거리 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및 취소)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 후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3호 또는 제4호의 가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안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로 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 까지의 기간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제휴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주행거리 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은행계좌번호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간 주행거리 정보가 15,000Km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정보가 15,00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대인 I·II, 대물 및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자손(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 자차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의
2,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2,000km초과 3,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3,000km초과 5,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5,000km초과 9,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9,000km초과 12,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12,000km초과 15,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15,000km 초과	0%

**144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에게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에 따릅니다.
- ④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항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② 위 제1항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특별약관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45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이하 '블랙박스'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블랙박스의 장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 과거 3년 이내 회사가 요청한 블랙박스의 장착사진, 영상기록 정보 등을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및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기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금액

사고처리 시 소용되는 비용

가입출동서비스

기타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블랙박스 장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블랙박스 제조사, 모델명, 부속품가액 등)에 대하여 알려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 장착여부를 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사진 또는 동영상상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블랙박스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 기록 정보를 회사가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알려야하며,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블랙박스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④6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직접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비정상적이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탑승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발생한 대중교통수단의 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승·하차(대중교통수단 또는 그 부속장치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제외함)하던 중 발생한 대중교통수단의 사고

####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 탑승중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 객실내의 좌석 및 손잡이 등이 있는 입석과 통로에 올라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외의 장소에 탑승하거나 또는 좌석 위에 올라타 서 있는 경우, 손잡이 등 부속장치에 매달려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이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탑승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반의 대중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3.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사고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고
5. 피보험자가 시험용(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 중인 대중교통자동차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
6. 대중교통수단의 설치, 수리, 점검, 정비, 청소작업 등 업무를 수행 하던중 발생한 사고
7. 대중교통수단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로서 업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4.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보험회사가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인당 1억 원을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통약관 가입필요

운전기능저하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기차(리프트)의 보상약관 적용

사고처리 시 소용되는 비용

기명출동서비스

기타

2. 후유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 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 1억 원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남는 때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①항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금 청구절차 및 제출서류는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해당 항목을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7. 참사랑자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또는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sup>(\*)</sup>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ip

(\*)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19세 이하의 자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19세 이하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녀학자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만1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자금으로 1사고당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 2. 자녀부상 위로금
 

피보험자의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7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의 '자녀부상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3. 자녀성형 위로금
 

피보험자의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을 한도로, 1cm당 10만원의 '성형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 ③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4. 자녀고도후유장애 위로금

피보험자의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고도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애를 말함)가 남은 경우에 1인당 5천만원의 자녀고도후유장애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지급되는 자녀학자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8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장 제2절 대물배상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장 제2절 대물배상을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의무보험과 관련하여 보통약관 제1장 제2절 대물배상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1사고당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한도	1사고당 보험금의 종류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 ② 이 특별약관의 대물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제2절 대물배상과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사고처리 시 소용되는 비용

가입출동서비스

기타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3절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9 지정정비업체 입고우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자기부담금을 30%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회사가 안내한 지정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항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20%로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지정정비업체 :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정비공장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시 회사가 안내하여 드리는 정비공장을 말합니다.

-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정비업체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이 불가능하고, 사고장소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지정정비업체가 없거나 지정정비업체까지 무상견인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이 가능하고, 사고장소 또는 피보험자의 거주지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지정정비업체가 없는 경우
  3. 회사가 안내한 지정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3조(적용배제)**

보험금 청구 이전에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피보험자가 회사의 지정정비업체 입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0 마이키즈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① 기영피보험자가 만 12세 이하(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작일자 기준)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출산예정

- 인 자녀가 있는 경우
- ②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란

1. 법률상의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2. 양자녀, 계자녀
3.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명의의 임신확인서 또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태아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 1조(가입대상) ①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함)
  2. 출산 예정인 자녀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신확인일 및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류(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② 회사가 '제1조(가입대상) ①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가입자격 조건의 증명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적용기간)**

- ①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다만, 보험기간 중도에 '제1조(가입대상) ①항'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이 특약의 적용시작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일 경우 임신확인일
  2. 재혼 또는 입양의 경우 호적등재일
-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④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가입대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기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1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해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3)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1)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 손해에 대해

보통약관  
납입일별

운전가능지역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한

사고처리 시  
소용되는 비용

건금출동서비스

기타



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인정 기간은 대물배상 지급기준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 (4)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5) 위 '(1)'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 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조,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제3조,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2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2.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로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2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3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환입)**

-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때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 공급이 곤란하거나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OEM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액)을 초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보통약관  
납입방법운전기능  
제한자기차량  
손해  
보상  
관련  
보상  
관련사고처리  
비용  
비용기타  
서비스기  
타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